

대전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6가단20795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기술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의 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 종결 2018. 8. 8.

판결 선고 2018. 9.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기술보증기금에게 90,617,029원 및 그 중 90,616,994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에게 72,577,299원과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기술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와 피고 C 사이에 서 생긴 소송비용은 그 중 90%를 피고 C이, 나머지를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이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앞으로 '원고 A'이라고 줄여쓴다) 사이에 2016. 1.29. 체결한 매매계약을 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하고, 피고 C은 원고 A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관련 법률관계

1) 원고 기술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B(앞으로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9. 9.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9.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기술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9. 9. 우리은행 세이 지점에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5.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후 보증기한이 2016. 9. 2.까지로 변경됨), 피고 회사는 위 은행으로부터 위보증서에 기하여 90,000,000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대출받았다.

- 3) 그런데, 2016. 2. 29.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의 지연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기술보증기금은 2016. 4. 7. 위 은행에 90,745,7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128,800원이 회수되어 잔액이 90,616,994원이고, 위 회수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이 35원이다.
- 4) 위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6. 4. 7. 현재연 10%다.

나. 연대보증인 원고 A의 재산처분행위 등

- 1) 원고 A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소유해 왔는데 2016. 1. 29.경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접수 제9859호)를 마쳐주었다.
- 2) 2016. 1. 29.경 원고 A은 아파트인 별지 표시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3) 별지 표시 부동산의 시가는 2016. 1. 29. 기준으로 185,000,000원이고, 2018.5. 18. 기준으로 200,000,000원이었다.
- 4) 별지 표시 부동산에는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주)한국씨티은행인 채권최고액 140,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5) 원고 A이 별지 표시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처분한 직후인 2016. 2. 15.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되었는데, 그 금액은 원금 127,000,000원, 이자 422,701원 합계 127,422,701원이다. 그 후 2016. 2. 17.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다. 원고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등

- 1)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는데, 대전지방법원 2016. 7. 4.자 2016개회11228 결정으로 원고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 2) 이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인권자인 회생채무자 원고 A이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고, 2018. 1. 25.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원고 A 사이에 2016. 1.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한다는 취지의 부인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2-2호증, 시가감정촉탁결과, 대전서구청장, (주)한국씨티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90,617,029원(대위변제금 잔액 90,616,994원 + 확정손해금 3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616,99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 5.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그대로 준용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A의 별지 표시 부동산 처분행위가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원고 A이 별지 표시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표시 부동산의 시가는 185,000,000원이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 A의 채무는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원금만 127,000,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A의 채무는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우리은행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더하면 이미 별지 표시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였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고 그 무렵 원고 A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피고 C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에게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에게 원고 A과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했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아파트 제103동 제1413호가 있었는데, 원고 A의 부탁으로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원고 A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고, 그 대신 원고 A 소유의 별지 표시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두 아파트를 목적물로 한 교환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5. 8. 11. G에게 F아파트 제103동 제1413호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처분하여 받은 돈이 원고 A에게 투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 돈이 원고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별지 표시 부동산과 위 다른 아파트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

1)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 A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전혀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단서의 '그 행위 당시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참조).

피고 C과 원고 A의 관계 등 변론에 드러난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인의 효력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소에서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있었던 위 증여계약은 일정 범위내에서 효력이 없게 되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 원칙적인 모습은 원물반환이라 하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 체결 후 별지 표시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더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가액배상의 범위

1) 주장의 요지

원고 A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기 전에 기술보증기금이 취소를 구한 범위는 7,800만 원이었다. 여기서 7,800만 원은 소 제기 당시 예상하였던 별지 표시 부동산의 시가

195,000,000원에서 근저당권부 채무인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채무 117,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 A은 부인 범위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의견이 달랐지만 기술보증기금의 소를 그대로 수계하는 상황이므로 기술보증기금의 청구취지에 부합하도록 7,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을 증여받은 직후 원고 A의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127,422,7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 A에게 41,800,539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당시의 별지 표시부동산의 시가 185,000,000원에서 위 금액들을 공제한 15,776,760원의 범위 내에서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가액배상의 기준시점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즉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대법원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은 위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한 법리를 전개한 바있다), 부인의 소에서 가액배상의 기준시점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 즉, 부인의 의사표시가 수익자에게 도달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면서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1. 29. 피고 C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의 시가

별지 표시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부인행위 당시인 2016. 1. 29. 기준으로 185,000,000원이고, 이 사건에서의 감정평가일인 2018. 5. 18. 기준으로 2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감정평가는 아파트의 위치 · 부근의 상황 및 주위환경 · 교통상황 등 입지조건과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의 정도와 질, 부대설비 상황, 층별 · 향별 · 위치별 효용성 · 내부평면방식 및 일반수요성 등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과 대체 ·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아파트의 가격수준 · 거래사례가격 · 평가전례가격 · 거래가능가격 · 호가 등

제반가치형성요인과 거래사례로부터 산정한 가격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루어졌는데, 가액배상의 기준시점인 2018. 1. 29.과 감정평가 기준일인 2018. 5. 18. 사이에 위와 같은 요인들의 변동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5. 18. 기준 시가 산출의 비교사례가 된 것은 2017. 12. 23.부터 2018. 4. 14.까지의 거래사례였고 그 거래가액 평균이 200,000,000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8. 1. 29.경의 시가는 2018. 5. 18. 기준 감정평가액 200,000,000원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16. 2. 15. (주)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7,422,701원이 존재하였다가 변제로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준시기가 가액배상기준시점인 2016. 1. 29.에 근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가액배상금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C이 원고 A에게 대여하였다는 돈

피고 C은 원고 A에게 합계 41,800,539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가액배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액배상금액에서 제외할 만한 근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C은 원고 A에게 부인의 효과로 인한 가액배상금으로서 72,577,299원(= 200,000,000원 - 127,422,7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부인의 소는 채권자취소소송과 같은 형성의 소가 아니라 이행청구의 소(확인소도 가능함)이므로 형성의 효력을 창출하기 위한 '부인 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가액배상에 대하여 가집행 문언을 함께 선고한다.

판사 임일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아파트 제107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H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15층 제1505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9.8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대전광역시 서구 E 대 38834.7㎡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 비율 : 38834.7분의 30.29 -끝-